



# 대한이비인후과학회

## KOREAN SOCIETY OF OTOLARYNGOLOGY

우 137-070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355-3 서초 월드 오피스텔 1508 호  
TEL: 02)3487-9091 FAX: 02)3487-9092 E-mail: [entsoc@korl.or.kr](mailto:entsoc@korl.or.kr) Homepage : [www.korl.or.kr](http://www.korl.or.kr)



### 임 원 (2005-2007)

이 사 장	장혁순
차기이사장	이철희
부이사장	배정보
부이사장	조 현
총무이사	이병돈
고시이사	윤주현
수련이사	오승하
간행이사	정광윤
학술이사	홍성화
재무이사	노환중
보험이사	양훈식
의무이사	도남용
대외공보이사	김영모
기획이사	이봉재
개원이사	신창식
법제이사	불정표
감 사	이상훈
감 사	심상열

### (2005-2006)

회 장	정명현
-----	-----

### 제 80 차 학술대회

학술대회장	정명현
학술이사	홍성화
실행위원	
정원호	정종우
구자원	이호기
백무진	이상학
김성완	이흥만
김정수	홍일희
김영모	태 경
정필상	선동일

문서번호 대이학 06 - 392 호  
 시행일자 2006. 7. 14  
 수 신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회원 여러분  
 제 목 제 80 차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대회 /  
 2006 추계 대한이비인후과 개원의협의회 학술대회  
 각종상 안내 및 후보자 모집/추천 독려 안내

회원 여러분의 건승을 빕니다.

제 80 차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대회/2006 추계 대한이비인후과 개원의 협의회 학술대회시 시상 예정인 학술상, 해외논문상, 전공의 우수연제상, 사회봉사상, 원로회원 특별상, 공로상 후보자 모집 및 추천 요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여 드리오니 회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1. 마감일시 : 2006 년 8 월 31 일(목)
2. 신 청 서 : 추계학술대회 공식 홈페이지 알림란  
[www.korl.or.kr/workshop/2006fall](http://www.korl.or.kr/workshop/2006fall)
3. 제 출 처 :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회 사무실  
[137-07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355-3  
서초월드오피스텔 1508 호

<우편물 분실 위험으로 반드시 등기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덧붙임 : 1. 각종상 신청서 견본 각 1 부  
2. 각종상 규정 각 1 부. 끝.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이사장 장혁순  
 제 80 차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대회장 정명현  
 대한이비인후과 개원의협의회 회장 최혁명



##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신청서

					접수 번호	*
인적사항	성 명	한글			영문	
	소속대학				직위(급)	
	주민등록번호					
	연 락 처	직장주소				
		직장전화			주택전화	
핸 드 폰				전자우편		
주요경력 5 가지	1.					
	2.					
	3.					
	4.					
	5.					
<p>상기와 같이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에 지원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06 . . . . .</p> <p style="text-align: right;">신청인 : _____ (인)</p> <p><b>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심사위원회 귀하</b></p> <p><small>* 란은 기재하지 마십시오.</small></p>						

## 최근 5년간 논문 목록

일련 번호	제 목	저자수	게재학술지명			게재 년도	Impact factor
			권(Vol.)	호(No.)	게재면		
1							
2							
3							
4							
5							
6							
7							
8							
9							
10							

✎ 작성시 유의사항

- 1) 게재년도는 yyyy 형식(예시 : 2001)으로 작성함.
- 2) 해당 논문 1면 사본(및 제1저자 혹은 Corresponding Author 증빙서)을 일련번호순으로 정리하여 제출.
- 3) Impact Factor 는 최근년도 JCR 을 기준으로 함.
- 4) 양식이 부족할 경우 위 표를 복사하여 사용하되 양식번호나 제목은 제외하고 반드시 표부분만 복사함.

[덧붙임 1-1-2]

## 최근 5년간 수상 및 표창 내역

일련 번호	내역	시상기관	수상년도
1			
2			
3			
4			
5			
6			
7			
8			
9			
10			

## 최근 5년간 저서 및 역서 목록

일련 번호	제 목	출 판 사	출판년도
1			
2			
3			
4			
5			
6			
7			
8			
9			
10			

## 최근 5년간 국내.외 학회활동 목록

일련 번호	학 회 명	활동내역	비 고
1			
2			
3			
4			
5			
6			
7			
8			
9			
10			



[덧붙임 1-2-1]

성 명	한글		영문
-----	----	--	----

### 최근 1년간(2005년 1월~2005년 12월) SCI 논문목록

일련 번호	논문제목	저자수	게재 학술지명			게재 년도	Impact Factor
			권 (Vol.)	호 (No.)	게재면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 작성시 유의사항

- 1) 해당 논문 1면 사본을 일련번호순으로 정리하여 제출함
- 2) Impact Factor 는 최근년도 JCR 을 기준으로 함.
- 3) 양식이 부족할 경우 복사하여 사용함.

[덧붙임 1-3]

## 전공의 우수연제상 신청서

성 명		년 차	
소 속			
연락처	주소		
	전화		팩스
	E-mail		
논문제목	국문		
	영문		
제 1 저자			
공동연구자			
구 분	구연 (     ) / 포스터 (     ) / Research Forum (     )		

## 사회봉사상 신청서

					접수 번호	*	
인적사항	성 명	한글			영문		
	소 속				직위(급)		
	주민등록번호						
	연 락 처	직장주소					
		직장전화			자택전화		
		핸 드 폰			전자우편		
자 기 소개서							
사회봉사 활동내역	1.						
	2.						
	3.						
	4.						
상기와 같이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사회봉사상에 지원합니다.  2006 . . . . .  <div style="text-align: right;">신청인 : _____ (인)</div>							
<b>대한이비인후과학회 사회봉사상 심사위원회 귀하</b> * 란은 기재하지 마십시오.							

## 원로회원 특별상 신청서

					접수 번호	*	
인적사항	성 명	한글			영문		
	소 속				직위(급)		
	주민등록번호						
	연 락 처	직장주소					
		직장전화			주택전화		
핸 드 폰				전자우편			
소개서							
진 료 및 사회활동	1.						
	2.						
	3.						
	4.						
	5.						

학술 활동	1.
	2.
	3.
	4.
	5.
	6.
	7.
	8.
	9.
	10.

상기와 같이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원로회원 특별상에 지원합니다.

2006 . . . . .

신청인 : (인)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원로회원 특별상 심사위원회 귀하**

\* 란은 기재하지 마십시오.

대한이비인후과학회

## 공 로 상 신청서

				접수 번호	*	
인적사항	성 명	한글		영문		
	소 속			직위(급)		
	주민등록번호					
	연 락 처	직장주소				
		직장전화		자택전화		
핸 드 폰			전자우편			
소개서						
활 동 내 역	1.					
	2.					
	3.					
	4.					
	5.					
상기와 같이 대한이비인후과학회 공로상에 지원합니다.  2006 . . . . .  <div style="text-align: right;">신청인 : _____ (인)</div>						
<b>대한이비인후과학회 공로상 심사위원회 귀하</b> * 란은 기재하지 마십시오.						

[덧붙임 2-1]

##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규정>

### 제 1 조 명칭

본 학술상의 명칭은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이라고 한다.

### 제 2 조 목적

본 학술상은 국내.외 학회활동과 학술연구업적을 통하여 대한이비인후과학회의 발전에 있어 기여도가 현저한 회원을 선정하여 격려함에 목적이 있다.

### 제 3 조 수여대상

신청일로부터 과거 5년간 국내.외 학술지에 15편 이상의 논문을 발표한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정회원으로서 금상, 은상, 동상 각 1명을 대상으로 한다.

### 제 4 조 대상업적

본 학술상의 대상업적은 신청인의 국내.외 학회활동과 학술연구업적을 포함한다.

1. 국내.외 학회활동(학술대회 발표 등)
2. 국내.외 학술연구업적(연구논문출판, 학술대회발표, 수상 및 표창, 저서 및 역서 등)

### 제 5 조 신청절차

제 3 조의 규정을 만족하는 회원 중 본 학술상을 신청하고자 하는 회원은 제 4 조의 대상업적을 모두 포함하는 이력서를 매년 8월 31일까지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 6 조 심사

대상 연구논문의 심사는 학술상 심사위원회에서 다음의 기준에 의거하여 분과별로 1편씩 총 3편을 선정하고 이중 금상, 은상, 동상을 선정한 후 상임이사회에 상정하여 결정한다.

1. 국내.외 학회활동 50%
2. 국내.외 학술연구업적 50%

### 제 7 조 시상

본 학술상의 시상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본 학술상은 이사장이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대회에서 시상한다.
2. 본 학술상의 수상자에게는 금상 200만원, 은상 150만원, 동상 100만원을 수여하며, 학술대회에서 수상자의 업적을 발표하는 기회를 부여한다.
3. 신청자가 없거나 적합한 대상자가 없을 때에는 수여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상금은 차기년도로 이월한다.
4. 제출된 서류 및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 제 8 조 기타

1.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회칙과 일반 관례에 따른다.
2. 본 규정은 199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 <해외논문상규정>

### 제 1 조 명칭

본 상의 명칭은 해외논문상이라고 한다.

### 제 2 조 목적

본 상은 이비인후과학 분야의 발전을 위하여 이비인후과학회 회원의 연구의욕을 고취시키고 해외 학술활동을 장려함에 목적이 있다.

### 제 3 조 수여대상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정회원을 대상으로 하며, 주 저자 또는 책임저자 1 명에게 수여함을 원칙으로 한다.

### 제 4 조 대상연구논문

전년도 1 월 1 일부터 12 월 31 일까지 발표된 SCI 논문중 다른 상을 수상하지 않은 논문을 대상으로 한다.

### 제 5 조 신청절차

신청자는 다음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매년 8 월 31 일까지 학회 학술상 심사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1. 신청서(소정양식)
2. 전년도 SCI 발표 논문 목록
3. 논문의 pdf 파일 또는 별책부록

### 제 6 조 심사

대상연구논문의 심사는 학술상 심사위원회에서 SCI 논문의 impact factor 를 합산한 것을 평가하여 대상 논문을 선정한 후 상임이사회에 상정하여 결정한다.

### 제 7 조 시상

본 상의 시상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본상은 이사장이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대회에서 시상한다.
2. 부상으로 상금 50 만원을 수여한다.
3. 신청자가 없거나 적합한 논문이 없을 시에는 수여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상금은 차기년도로 이월한다.
4. 제출된 서류와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한다.

### 제 8 조 기타

1.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회칙과 일반관례에 따른다.
2. 본 규정은 2005 년 4 월 16 일부터 시행한다.

[덧붙임 2-3]

<전공의 우수연제상 규정>

제 1 조 명칭

본 상의 명칭은 전공의 우수연제상이라고 한다.

제 2 조 목적

본 상은 이비인후과학의 발전을 위하여 전공의의 연구 의욕을 고취시키고 학술활동을 장려하고 격려함에 목적이 있다.

제 3 조 수여대상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준회원으로, 제 1 저자이어야 하며, 1 위,2 위,3 위 각 1 명을 대상으로 한다.

제 4 조 대상연구논문

가을에 개최되는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대회에서 발표되는 연제로 한다.

제 5 조 신청절차

신청자는 다음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매년 8 월 31 일까지 학회 학술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1. 신청서(소정양식)
2. 완성된 논문 (원본 1 부, 복사본 4 부)

제 6 조 심사

대상 연구논문의 심사는 학술위원회에서 3 편을 선정하고 이 중 1,2,3 위를 선정한 후 상임이사회에 상정하여 결정한다.

제 7 조 시상

본 상의 시상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본상은 이사장이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대회에서 시상한다.
2. 부상으로 1 위 100 만원, 2 위 50 만원, 3 위 30 만원을 각각 수여한다.
3. 신청자가 없거나 적합한 논문이 없을 시에는 수여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상금은 차기년도로 이월한다.
4. 제출된 서류와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 8 조 기타

1.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회칙과 일반관례에 따른다.
2. 본 규정은 1999 년 5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덧붙임 2-4]

<사회봉사상 규정>

제 1 조 명칭

본 상의 명칭은 사회봉사상이라고 한다.

제 2 조 목적

본 상은 이비인후과학 분야의 발전을 위하여 이비인후과학회 회원의 사회 봉사 활동을 장려함에 목적이 있다.

제 3 조 수여대상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회원중 지역사회에 헌신적으로 봉사활동을 한 전공의, 봉직의, 개원의 각 1 명을 수여대상으로 한다.

제 4 조 신청절차

신청자는 자기소개서와 함께 사회봉사활동 내역을 작성하여 학회 의무위원회에 신청한다.

제 5 조 심사

심사는 의무위원회에서 전공의, 봉직의, 개원의를 구별하여 각 1 명을 선정한 후 상임이사회에 상정하여 결정한다.

제 6 조 시상

본 상의 시상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본 상은 이사장이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대회에서 시상한다.
2. 신청자가 없을 시에는 수여하지 않을 수도 있다.
3. 제출된 서류와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 7 조 기타

1.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회칙과 일반관례에 따른다.
2. 본 규정은 2005년 4월 16일부터 시행한다.

## <원로회원 특별상 규정>

### 제 1 조 명칭

본 상의 명칭은 원로회원 특별상이라고 한다.

### 제 2 조 목적

본 상은 이비인후과학 분야의 발전을 위하여 이비인후과학회 원로회원의 학술활동과 사회활동을 격려하고 장려함에 목적이 있다.

### 제 3 조 수여대상

실질적인 학술활동과 진료 및 지역사회 활동을 하여 학회의 위상을 높인 원로회원 1 명을 대상으로 한다.

### 제 4 조 신청절차

정회원이 대상자의 소개서와 함께 학술활동, 진료, 사회활동 내역을 작성하여 학회 의무위원회에 추천 신청한다.

### 제 5 조 심사

심사는 의무위원회에서 선정한 후 상임이사회에 상정하여 결정한다.

### 제 6 조 시상

본 상의 시상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본상은 이사장이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대회에서 시상한다.
2. 신청자가 없을 시에는 수여하지 않을 수도 있다.
3. 제출된 서류와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한다.

### 제 7 조 기타

1.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회칙과 일반관례에 따른다.
2. 본 규정은 2005년 4월 16일부터 시행한다.

## <공로상 규정>

### 제 1 조 명칭

본 상의 명칭은 공로상이라고 한다.

### 제 2 조 목적

본 상은 이비인후과학 분야의 발전을 위하여 개인적으로 많은 희생을 하고 아낌없이 노력한 회원을 치하하고 표창함에 목적이 있다.

### 제 3 조 수여대상

학회의 발전을 위하여 개인적으로 많은 희생을 하고 아낌없이 노력한 정회원 3 명을 대상으로 한다.

### 제 4 조 신청절차

정회원이 대상자의 소개서와 활동내역을 작성하여 학회에 추천 신청한다.

### 제 5 조 심사

의무위원회에서 3 명을 선정한 후 상임이사회에 상정하여 결정한다.

### 제 6 조 시상

본 상의 시상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본상은 이사장이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대회에서 시상한다.
2. 신청자가 없을 시에는 수여하지 않을 수도 있다.
3. 제출된 서류와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한다.

### 제 7 조 기타

1.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회칙과 일반관례에 따른다.
2. 본 규정은 2005 년 4 월 16 일부터 시행한다.